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지역등의출입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취재목적 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甲선교사와 A종합상사 乙상무는 각기 선교 및 영업차 전쟁지역인 X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불허되었다. 甲과 乙은 위 출국불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행정법원은 甲과 乙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甲·乙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문의 2>

처벌규정의 위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행 정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324m², 연면적 1,285m²)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관할행정청인 A시(市)의 시장 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甲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2005. 6. 1. “관계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들은 전부 구비되었지만, 위 장례식장이 신축될 경우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어 공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동의서도 대부분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甲은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들을 들고 그 당부(當否)를 논하시오. (50점)

【참조조문】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략)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13.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역)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다. (생략)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5. (생략)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 2 문

〈제2문의 1〉

다음 사항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가.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 대한 퇴직인사발령

나.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제2문의 2〉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 초 안 지 -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민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X토지는 甲의 단독 소유, Y토지는 甲과 乙의 공유(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甲은 X토지 위에 A건물을, Y토지 위에 B건물을 신축하고, 丙에게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丁에게 A건물 및 Y토지 중 甲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이 임의로 A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C건물을 신축하였는데, 丙과 丁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戊가 X토지와 Y토지 중 위 지분을 모두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甲과 戊 사이, 甲과 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1990. 3. 5.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甲은 2000. 3. 5. 乙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乙은 2000. 10. 5. 甲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천만원을 변제하였다. 甲은 2001. 3. 5. 乙과 丙을 상대로 8천만원의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乙, 丙에 대한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련된 쟁점들을 논하시오. (30점)

<제2문의 2>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질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 소유의 A토지에 관하여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乙, 丙을 상대로는 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丁을 상대로는 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위 丙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丙은 甲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丁은 甲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甲의 주장사실 및 丁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이 경우 법원은 甲의 乙, 丙, 丁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 만약 위 사례와 달리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丁의 점유개시일이 丁이 주장하는 날짜보다 뒤인 것이 밝혀져서 丁의 점유기간이 변론종결 당시 아직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丁 주장의 점유개시일에 관하여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가?

〈제 2 문〉 다음을 약술하시오.

- 1)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25점)
- 2) 문서의 제출의무 (25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제 1 문〉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인 甲은 자기명의의 주식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사실에 관하여 신문기자 A가 변칙상속 운운하면서 기사작성을 위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乙과 丙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5백만원씩 주면서 “A가 나에 관하여 허위 기사를 쓰려고 하니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주어라”고 하였다.

甲의 지시에 응한 乙과 丙은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정 무렵 귀가하는 A를 만나 “더 이상 甲의 뒤를 캐지 말고 甲에 관한 기사를 쓰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A가 코웃음 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乙과 丙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이에 위협을 느낀 A는 자신의 자동차로 피신하면서 마침 뒷좌석에 있던 골프채로 다가오는 乙의 어깨를 내리쳤다. 골프채에 맞아 쓰러지는 乙을 본 丙은 乙을 구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근처에 있던 각목을 집어들어 A의 머리를 한차례 때렸다. 머리를 맞은 A는 잠시 후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몸을 추스린 乙과 丙은 곧바로 甲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씩을 더 주지 않으면 甲이 자신들에게 A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甲은 즉시 乙과 丙에게 1천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고, 관련 특별형법의 적용법조도 부가적으로 기술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택시를 타고가던 승객 甲은 다른 손님 乙이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하였다. 그 지갑에는 乙의 형인 사망한 丙의 자동차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 부분에 자신의 사진을 겹쳐 놓고 복사하여 甲의 사진이 들어간 운전면허증 사본을 만든 후, 인근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그 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계약서 용지에 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근처 인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겨 온 丙 명의의 도장을 찍어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만든 운전면허증 사본과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자신이 마치 丙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리점에 함께 제출하고 이동전화기 1대를 구입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제2문의 2〉

형법상 수뢰죄의 객체인 뇌물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A 지역에서는 주차해 둔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그 지역 주민들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차량주차구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마침 그 지역에서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찰은 이 무인카메라에 甲이 乙을 야간에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였다. 甲은 수사과정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과 甲이 일치하고 추행의 결과로 乙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절차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50점)

1. 경찰이 비디오테이프를 주민들로부터 제출받은 행위의 법적 성격과 적법여부를 논하시오.
2. 제1심 법원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면, 그 결정은 적법한 것인가를 논하시오.
3.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 중 상해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를 논하시오.

제 2 문

〈제2문의 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서 말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룬다’는 의미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제2문의 2〉

검사는 甲을 폭행혐의로 공소제기하였는데 공판정에는 甲의 동생인 乙이 甲인 것처럼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검사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乙에 대한 구제방법을 재판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상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B주식회사에 A회사의 영업용 중요자산인 공장 및 그 시설물을 대금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A회사의 이사회결의 없이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위 주주총회에서 일부주주가 반대하였지만, 대주주인 甲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였다. 이후 甲은 위 매매대금을 A회사 명의로 C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A회사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유용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주주총회결의, 공장 및 그 시설물의 매매계약,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각각 다루고자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상법상의 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丙이 단순히 담보의 목적으로 이 어음에 배서를 한 결과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었다. 이 어음의 소지인인 丁이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될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논하시오. (30점)

<제2문의 2>

甲은 건물의 소유자이고 乙은 그 임차인이다.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경우에 대비하여 甲과 乙이 각각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 무 부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